

주 암 호

— 통행제한도로
— 우회도로



동 북 호

— 통행제한도로
— 우회도로



상 사 호

— 통행제한도로
— 우회도로



mev 2008년 영산강·섬진강수계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지키기
먹는 물 보호

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지키기
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
'약속'입니다!

mev 환경부
영산강유역환경청



mev 환경부
영산강유역환경청

영산강·섬진강수계 통행제한도로



상수원명	통행제한도로	우회도로
주암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도 6호 - 시점 : 전남 화순군 목고면 목고리 - 종점 : 전남 화순군 남면 동산리 (합수복합거리) ○ 시도8호 - 시점 :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- 종점 : 전남 화순군 남면 목고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순군 남면 동산리 → 화순군 동면 목암리 → 동곡면 천변리 → 주암면 광천리 ○ 문덕면 용암리 → 곡내면 곡내리 → 이양면 금굴리 → 현천면 모산리 → 남면철산리
동북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도2호 - 시점 : 전남 화순군 이서면 서리 (묘치삼거리) - 종점 :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 (야사삼거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순군 이서면 서리 묘치고개 → 동곡면 동곡초등학교 → 동곡면 안성리 독재마을 → 북면 다곡리 하대마을입구 → 북면 이천리 야산초등학교삼거리 → 북면 이천리 도천마을 → 북면 서유리 서초등학교 → 북면 옥리 → 화순군 이서면 청향리(신기마을 입구) → 담양군 남면 구산리 (야사삼거리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도4호 - 시점 : 전남 화순군 이서면 청향리 (신기마을입구) - 종점 : 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(하대마을입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면 북면리삼거리 → 이서면 안성리 안성제 → 이서면 보월리 차마삼거리 → 이서면사무소 삼거리 → 이서면 보월리 이서북초교 → 담양 남면 남초교 → 담양 남면 구산리삼거리
상사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도58호(시도4호선) - 시점 : 전남 순천시 상사면 빙지리 (지방88호 합류점) - 종점 :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(지방857호 합류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낙안면 빙지리 → 동래리 → 성곡리 → 석흥리

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해 알아 봅시다!

상수원 통행제한도로란...



• 우리가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·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

※ '99.3.2 경유수송(2만t) 유조차가 춘천담으로 추락, 유류 3천t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담 빙류 중단

통행이 제한되는 차량

제한차량

- 유류·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(역상, 농약 및 원재,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) 수송 차량

가능차량

- 군용차량,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인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, 통행증을 발급 받은 차량

※ 통행제한차량은 '우회구간' 을 이용합니다. (영선강수계 통행제한도로 참고)

통행증을 발급 받으려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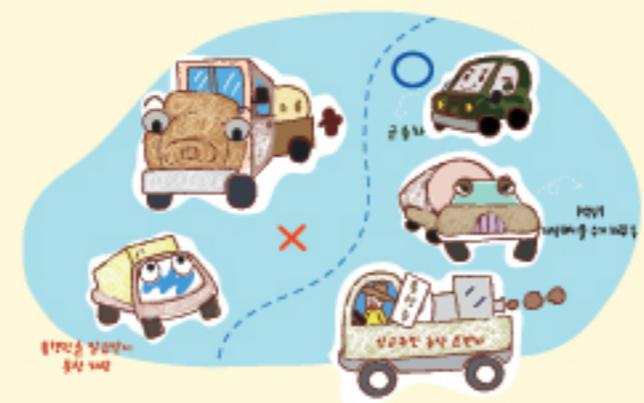


• 통행증 발급대상 차량

-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·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
-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,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(역상) 배출업소의 유해물질·폐기물(역상) 수거 차량
-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
• 통행증 발급기관

-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

통행제한도로

다함께 안전하게 지켜요!

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.



• 안내판 설치

- 위치 : 시점·중점 및 중간 진입로의 진입전 1km이내 전방 우측과 진입로 우측에 설치

• 안전시설 설치

- 위치 : 차량 운행시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 등
- 시설 : 무인속도감시카메라, 고강도교량난간, 야간점멸등, 미끄럼 방지시설 등

• 차단벽(저류조) 설치

- 목적 : 수질오염물질을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한
- 설치대상
 - 하천 :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이내의 도로 주변
 - 호소 :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하류와의 경계점
- 설치조건 :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함

• 설치 및 개·보수 기관 : 해당 시·도(시·군·구)

통행제한차량이
통행제한도로를 이용할 경우
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!



• 통행제한차량이 통행제한도로를 이용할 경우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※ 형위자여 대한 처벌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

